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5
----------	-----

제출년월일 : 2012. 4.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평창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인재육성 기반구축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높여 지원함으로써 관내 학생들의 학력향상 도모는 물론 나아가 관내 인구의 전출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지원범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예산지원 (안제4조) : 10퍼센트 범위 내에서→25퍼센트 범위에서
- 해당 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25 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가. 관 계 법 령 : 붙임
- 나. 예 산 조 치 : 해당없음
- 다. 관 계 부 서 승 인 : 해당없음
- 라. 입 법 예 고 : 2012. 3. 19. ~ 4. 8 (21일간), 제출된 주민의견 없음.
- 마.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 붙임
- 바. 비 용 추 계 서 : 별첨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당해년”을 “해당 년”으로, “10퍼센트 범위 안에서”를 “25퍼센트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예산지원) ①군수는 <u>당해년</u>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u>10퍼센트 범위 안에서</u>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국비·도비 보조사업 등 특정재원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4조(예산지원) ①----- <u>해당년</u>----- ----- ----- <u>25퍼센트 범위</u>에서-----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평창군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인재육성 기반구축,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실시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교육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경비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학생들의 학력향상 도모는 물론 나아가 관내 인구의 전출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고자 하는 것임.
-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예산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및 결과

(단위: 천원)

사업명	산출내역	예산액	비고
계		20,486,000	
교육경비 지원사업	방과후학교, 인재육성프로그램, 문화·체육꿈나무육성 등	13,220,000	매년 30억 가량
친환경 학교급식사업	유치원, 초·중·고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확대지원	3,666,000	전체 10억 소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존시설 활용 설치시 15억원 (도30%, 군70%), 설치 및 운영	1,600,000	횡성20억(군14) 홍천8억(군5.5)
농생대 주변학교 발전 프로젝트 및 군 권장사업	신리초, 대화중·고, 봉평·용평일원 군시책발굴 추진	2,000,000	

나.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 수입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 상 진
연락처	(033) 330 - 22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이후 (2016년 이후)	계
세 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세 출		2,486,000	3,400,000	4,700,000	4,700,000	5,200,000	20,486,000
교육경비 지원사업		2,120,000	2,400,000	2,500,000	3,000,000	3,200,000	13,220,000
친환경 학교급식		366,000	600,000	800,000	900,000	1,000,000	3,666,000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	1,000,000	300,000	300,000	1,600,000
농생대주변 학교발전 프로젝트, 군권장사업		-	400,000	400,000	500,000	700,000	2,000,000
재원 조달		2,486,000	3,400,000	4,700,000	4,700,000	5,200,000	20,486,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486,000	3,400,000	4,700,000	4,700,000	5,200,000	20,486,000
	지방세	2,486,000	3,400,000	4,700,000	4,700,000	5,200,000	20,486,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 (보조의 신청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